

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, 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“제14조(경비보조 및 지원 등)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,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, 그 밖에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”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 data-bbox="204 521 312 562"><신설></p> <p data-bbox="172 1055 371 1095"><u>제14조</u> (생략)</p>	<p data-bbox="810 521 1420 958"><u>제14조(경비보조 및 지원 등)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</u>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,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, 그 밖에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 data-bbox="810 1055 1153 1095"><u>제15조</u> (제정안과 같음)</p>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평생교육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평생교육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법 제11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평생교육지원 업무 관련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법 제12조에 따른 협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 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협의회 운영)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

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- ⑤ 상정된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.

제6조(수당 등)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제8조(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등)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관·단체 등을 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② 도지사는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③ 진흥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제1항에 의해 지정받은 기관·단체 등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9조(업무) 진흥원은 법 제20조제2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충청북도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
2.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 전문성 제고
3. 장애인 및 소외계층 등에 대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
4. 법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제 운영
5.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 및 자료구축
6.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지정 운영)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진흥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·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법인의 정관, 등기부 등본, 법인대표의 인감증명서
2. 재산목록(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)
3. 사업계획서와 사업 수지계산서
4. 최근 3년간 법인의 평생교육 관련 사업실적
5.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배치도 및 직원의 배치 계획

② 도지사는 평생교육 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 중 공공성, 대표성, 전문성, 접근성, 연계성, 장래성, 적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지정운영자가 협약서 지정 조건을 위반한 경우
2. 지정운영자가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

제11조(사업계획서 승인 등) ①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충청북도 일반 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.

② 진흥원장은 매년 8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진흥원장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지도·감독)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도·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진흥원장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, 진흥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3조(시설이용자 안전 보험가입) ① 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
2.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

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·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4조(경비보조 및 지원 등)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,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, 그 밖에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평생교육법

제11조(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시·도지사는 제9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시·도 평생교육협의회) ①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평생교육협의회(이하 “시·도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시·도협의회는 의장·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시·도협의회의 의장은 시·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·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.

④ 시·도협의회 위원은 관계공무원, 평생교육관련 전문가,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·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.

⑤ 시·도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6조(경비보조 및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
1. 평생교육기관의 설치·운영
2.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
3.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

4.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 등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20조(시·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) ①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·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
2. 평생교육 상담
3.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
4.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
5.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□ 평생교육법시행령

제3조(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

③ 시·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평생교육진흥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시·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)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시·도평생교육진흥원(이하 “시·도진흥원”이라 한다.)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·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진흥원은 법 제20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,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,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 : 평생교육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공모 등
2. 비용추계의 전제 : 평생학습 확산을 위한 기반구축 등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연도	2011년도	2012년도	2013년도	2014년도	2015년도	합계
계	372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72,000
도 비	372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72,000

4. 부대의견 : 해당사항 없음

5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충청북도 정책기획관실 우경수
연 락 처	043) 220-2142

II.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

□ 2011년도 사업예산 : 372,000천원(도비)

○ 평생학습 기반구축 : **101,000천원**

- 충북 평생교육진흥원(인건비) : 26,000천원
-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: 10,000천원
- 충북 평생교육 총람 제작 : 25,000천원
- 평생학습 인증체계(이력관리) 구축 : 40,000천원

○ 평생학습 역량강화 및 확산 : **145,000천원**

-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수요조사 : 35,000천원
-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·보급
 - 교양·여가 등 함양 평생교육 : 20,000천원
 - 학습, 고용·복지 등 평생교육 : 20,000천원
 - 소외계층 평생교육 : 30,000천원
 - 도민제안 평생교육 : 20,000천원
 - 대학연계 평생교육 : 20,000천원

○ 평생학습 지원체제 및 네트워크 활성화 : **126,000천원**

- 평생학습 전담인력 워크숍 및 컨설팅 : 26,000천원
- 1시군 1특성화 사업 공모 : 10,000천원
- 평생학습도시 시군 문화축제 지원 : 10,000천원
- 소식지 발간 : 5,000천원
- 평생학습 기관 평가 및 시상 : 10,000천원
- 홈페이지 구축 : 35,000천원
-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: 15,000천원
- 평생학습 확산 홍보 : 15,000천원

※ 근거 :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1조(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)